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516
----------	-------

발의연월일 : 2025. 12. 23.

발 의 자 : 민형배 · 조계원 · 최혁진
양부남 · 조인철 · 김우영
주철현 · 이성윤 · 이개호
소병훈 · 김문수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감소와 수도권 인구집중으로 인한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정부출연금 규모를 5조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에 관한 자문기구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지방소멸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출연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설치하면서, 그 존속기한을 2031년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인 인구감소와 수도권 인구집중에 따른 지방소멸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기한을 두지 않고 상시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출연금 규모 또한 확대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

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금을 통한 지방소멸 대응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에 관한 자문기구 설치 필요합니다.

이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정부출연금 규모를 5조원으로 상향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에 관한 자문기구를 설치해 기금 운용 전반에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자문을 제공하려 합니다(안 제26조의2 신설 등).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호 중 “1조원”을 “5조원”으로 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 자문기구 설치) ①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에 관한 정부, 기금관리조합,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 및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18545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에 관한 특례) 제23조제1호의 개정규정

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한 정부출연금은 2027회계연도에는 2조원, 2028회계연도에는 3조원, 2029회계연도에는 4조원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회계연도 마다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구성한다. 1. 정부출연금 <u>1조원</u> 2. (생 략) <u><신 설></u>	제23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 ----- ----- -----. 1. ----- <u>5조원</u> 2. (현행과 같음) <u>제26조의2(지방소멸대응기금 관</u> <u>련 자문기구 설치) ① 지방소</u> <u>멸대응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에</u> <u>관한 정부, 기금관리조합, 광역</u> <u>지원계정심의위원회 및 기초지</u> <u>원계정심의위원회의 자문에 응</u> <u>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u> <u>장관 소속으로 지방소멸대응기</u> <u>금 관련 자문기구를 둘 수 있</u> <u>다.</u> <u>② 제1항에 따른 자문기구의</u> <u>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u> <u>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u> <u>한다.</u>
법률 제18545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법률 제18545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유효기간) ① (생략)	제2조(유효기간) ① (현행과 같음)
<u>② 제22조부터 제29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u>	<u><삭제></u>